

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

예규(재일 2008-1)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와 관련하여, 후보자 등재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숙련도 평가 실시, 국립과학수사연구원, 대검찰청 등 국가기관 연구소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그 결과를 감정인 후보자 자격심사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함
- 감정인에 대한 교육·연수 명령의 주체를 법원행정처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감정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교육·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- 이 예규 제29조제1항제2호 ‘가호’는 ‘제1호’의 오키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

2. 주요내용

- 법원행정처장은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결과, 숙련도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 명단을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함(안 제5조제2항제1호다목)
- 법원행정처장은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, 이에 대한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음(안 제5조의2제1항제2항)

-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, 문서등 감정인에 대한 교육·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 명령에 관한 사항,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 작성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(안 제5조의2제3항)
- 법원행정처장은 감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·연수를 받을 것을 명하거나 문서등의 감정 업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명할 수 있고, 이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감정인을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(안 제21조제1항제2항)
- 이 예규 제29조제1항제2호 중 ‘가호’ 를 ‘제1호’ 로 정정함 (안 제29조제1항제2호)

3.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(재일 2008-1) 일 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(재일 2008-1) 일부개정예규안

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(재일 2008-1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의나 중 “가.목에 의한”은 “법원행정처장은 가목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의다 중 “범죄경력조회 등”은 “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,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(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 등을 토대로 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의라 중 “다.목”을 “다목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인 작성·관리 등)

-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 재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실시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과

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1.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제5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
2.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·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 명령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 작성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21조제1항 중 “법원장 및 지원장”은 “법원행정처장”으로, “국가기관 연구소로부터 적절한”은 “감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”으로, “문서감정업무”는 “문서등의 감정업무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『감정인 명단』에서 삭제할 수 있다.”는 “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감정인을 『감정인 명단』에서 삭제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라 감정인을 『감정인 명단』에서 삭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, 제3항 및 제4항 본문을 준용하고, 이 경우 “법원장 또는 지원장”은 “법원행정처장”으로 본다.

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을 『감정인 명단』에서 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인의 명단 등재를 요청한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그 삭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9조제1항제2호 중 “가호”를 “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감정인 명단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『감정인 명단』의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.</p> <p>1. 측량감정인, 문서등의 감정인, 공사비등의 감정인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<u>가.목에 의한</u>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.</p> <p>다. 법원행정처장은 <u>범죄경력조회 등</u>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의 명단을 『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』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한다.</p> <p>라.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<u>다.목에 따라</u> 송부 받은 명단의 감정인 후보자 중에서 평정기준표(전산양식 A1800)에 의하여 감</p>	<p>제5조(감정인 명단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측량감정인, 문서등의 감정인, 공사비등의 감정인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<u>법원행정처장은 가목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다. ----- <u>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,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(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</u> 등을 토대로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라. ----- <u>다목</u>----- ----- -----</p>

정인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등재 요청한다. 다만,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재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마. (생략)

③ ~ ⑧ (생략)

<신설>

마. (생략)

③ ~ ⑧ (생략)

제5조의2(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인 작성·관리 등)

① 법원행정처장은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실시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1.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제5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

2.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·연수 및 세

제21조(감정인에 대한 지도·감독)

①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정된 감정인들에게 국가기관연구소로부터 적절한 교육·연수를 받을 것을 명하거나, 문서감정업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 등을 명할 수 있다.

②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『감정인 명단』에서 삭제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미나 개최 등 명령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 작성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21조(감정인에 대한 지도·감독)

① 법원행정처장-----
--- 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-

-, 문서등의 감정 업무-----
-----.

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감정인을 『감정인 명단』에서 삭제할 수 있다.

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라 감정인을 『감정인 명단』에서 삭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, 제3항 및 제4항 본문을 준용하고, 이 경우 “법원장 또는 지원장”은 “법원행정처장”으로 본다.

④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을 『감정인 명단』에서 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인의 명단 등재를 요청한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그 삭제 사실을 통지하여야

제29조(측량감정의 감정료)

① 토지·건물등에 대한 측량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.

1. (생략)
2. 가호 이외의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적측량감정의 경우에는 『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에 따른 기준 소정의 금액에 70%를 곱한 금액

3. (생략)

② (생략)

한다.

제29조(측량감정의 감정료)

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1호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-1417